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학겸임교사 운영 기준과 예산지원 및 마이스터교 지원 특례 등〉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87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4
------------------	---

1. 산학겸임교사 배치 등 운영 및 예산지원 등(안 제22조)	4
--	---

2.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3조의3)	10
------------------------------------	----

3.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 및 홍보 시책 특례 신설(안 제61조의2) ...	14
---	----

※ 참고자료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18
-------------------------------	----

2. 직업교육 관련 법령 기본계획 조문	19
-----------------------------	----

3. 직업교육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0)	2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동진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1.
3. 회부연월일 : 2025.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점임 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점임교사의 정원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들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고 있어 학교들간 운영의 편차가 큰 동시에 안정적인 수급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가 산학점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외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책이 부족하여 양질의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점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여야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학겸임교사 배치 등 운영 및 예산지원 등(안 제22조)

개정안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임용,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생략)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
<u><신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자격·임용·정원·배치·수당지급 등 기준-----</u> -----.

산학겸임교사¹⁾는 학교 설립 및 학과 개편 등으로 인해 교원 인력 양성이 없는 특정 교과목, 산업체 현장 연계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일시적으로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성과를 제고²⁾하려는 것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2조³⁾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42조⁴⁾는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는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1) 김진모 등 6인, 산학겸임교사의 직무 만족도 및 교육요구도 분석:산학겸임교사와 담당교사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p46,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52권제1호, 2020.3. “산학겸임교사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산학협력의 측면에서 활용하는 제도이며 산업체와 학교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직무 활동을 겸하는 교원을 의미함.”

2) 이지영·한동숙, 경기도 직업계고 산학겸임교사 제도 운영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p3.,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제43권제2호, 2024.6.

3)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학교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 가능)가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등에 관한 법률 상 근거규정이 부재하여,⁵⁾ 개별 학교들이 이들의 임용, 정원, 배치 등을 임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학교들 간 운영 상 편차가 크고,⁶⁾ 사업자가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5) 이지영·한동숙, 경기도 직업계고 산학겸임교사 제도 운영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p4.,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제43권제2호, 2024.6.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계고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운영할 시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 이 지침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학기 단위로, 주당 14시간 이하로 채용하여야 하며, 보수는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보수 규정’을 준용함.”

6) 이지영·한동숙, 경기도 직업계고 산학겸임교사 제도 운영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p4.,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제43권제2호, 2024.6.

“산학겸임교사는 학교 교원 정원 외로 운영되는 계약제 교원으로 산학겸임교사의 선발과 운영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산학겸임교사 유무가 다르며, 산학겸임교사가 있더라도 학교별로 그 수가 상이하다.”

“마이스터고”라 함) 등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최근 교육부는 실력 있는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이 산학겸임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을 ‘학력’이 아닌 ‘경력’을 기준으로 완화⁷⁾하였는데,

이는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성 높은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학교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내실화⁸⁾를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산학겸임교사의 배치,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배치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는 교육공무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영어회화 강사 등을 해당 기준에 따라 의무 배치함으로써 특히 사립학교의 운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와 함께, 산업

7) 교육부 보도자료, 중등직업교육발전방안, p14, 관계부처 합동, 2023.8.24.

8) 교육부 보도자료, 중등직업교육발전방안, p2, 관계부처 합동, 2023.8.24.

“입학자원은 지난 10년 사이(2012년 대비 2022년) 일반고가 29% 감소한데 반해, 특성화고는 47%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이 직업계고에 더욱 크게 작용함. 직업계고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규모 특성화고가 증가하는 등 내실있는 직업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수요 변화나 직업계고 별로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이 산학점임교사의 임용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산학점임교사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학점임교사의 배치,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학교의 장이 아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사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인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22조제3항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점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재정 지원 범위와 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동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취지와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의 특수성·상황과 산업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학점임교사 등의 배치, 정원 등에 대한 기준을 학교

의 장이 아닌 자가 정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점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개정안과 같이 의무규정으로 정하면 국가, 시·도 등에 과도한 재정소요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것을 전제로 개정에 이견이 없음.⁹⁾

9) 「정부조직법」 제8조는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34조는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학겸임교사 등’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라면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조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22조제2항, 제4항의 ‘정원’이라는 용어를 ‘규모’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직업교육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안 제23조의3)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업교육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3(직업교육의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직업교육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결과와 교육 효과를 평가하여 관련 개선 대책을 다음 차수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 및 실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자

치단체에 학교에서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에게는 기본계획을 교육감에게는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정책 분야별 기본법이나 지원법·촉진법에서 사용되는 규정이고,

기본계획은 행정청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단계적인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실체규정의 앞부분에 두면서, 조 제목은 ‘○○○○ 기본(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주체, 계획 수립시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¹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제23조의3이 조 제목을 ‘직업교육의 보장 등’으로 하면서, 각 항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보장에 대한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제1항), 교육부장관은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p266~267, 국회사무처, 2024.5.

기본계획을(제2항), 교육감은 시행계획(제3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 등의 책무¹¹⁾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부여 및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체계상 어색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조는 입법목적을 「교육기본법」 제9조¹²⁾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바, 직업교육의 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다른 법령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¹³⁾을 마련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우리 위원회에는 입법화되었을 때, 향후 직업교육의 기본법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직업교육법안”이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바,

11)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체적·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3) 참고자료 2. 직업교육 관련 법령 기본계획 조문

개정안 제23조의3의 내용과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¹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직업교육의 범위는 초·중등단계 뿐만 아니라 고등, 평생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기본법 마련을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지원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4) 참고자료 3. 직업교육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50, 2024.11.21.)

3.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 및 홍보 시책 특례 신설(안 제61조의2)

개정안은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시책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례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마이스터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홍보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마이스터고에 양질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의 동 조항이 특례 조항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특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전국 직업계고 516개교 중, 마이스터고는 약 10%인 53개교에 불과하므로,¹⁵⁾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동 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 받지 못하는 나머지 463개의 특성화고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위임받아 행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대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¹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s://www.hifive.go.kr>)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마이스터고 또한 중등직업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 및 홍보 시책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신설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제61조의2제1항의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지원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도 마이스터고에 대한 광범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¹⁷⁾하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지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형태의 초·중등학교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 동조 제2항의 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도 다른 직업계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17)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 복지, 산학협력 등을 위해 지정기간 동안 재정지원이 가능함.

정부는 마이스터고가 제도약을 위해 매년 발전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학과 개편금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발전금: ('23~'24년) 5개교 x 5억원(교부금) → '25년에도 학교당 5억원 지급 예정

** 학과 개편금: ('24년) 4개 학교 X 3억원(교부금) → '25년에도 개편지원금 지원 예정

있어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는 경우, 향후 특성화고 등 다른 직업계고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193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전승교육사,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 교 운 영 위원회에 서 정하 는 자 격 기 준 에 해당하 는 자. 다만,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 한 학 교 의 경 우 에 는 학 교 법 인 의 정관 등 이 정하 는 자 격 기 준 에 해당하 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 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합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4. 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
5. 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기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장,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